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84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7. 10.

발의자 : 박광온 · 김수민 · 백혜련
권칠승 · 신경민 · 이학영
이찬열 · 이춘석 · 김영주
김해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등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도로·도시철도시설·철도시설의 터널·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장애지역에 라디오·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‘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전수조사’에 따르면,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3,026 개의 터널·지하공간 중 라디오방송 수신이 어려운 곳은 2,650개(87.5%),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신호 수신이 어려운 곳은 2,528개(83.5%)에 이르고 있어,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널·지하공간 등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하기 어려운 상태임.

이에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

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의3).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의3(재난방송등 의 설치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0조의3(재난방송등 의 설치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 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